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91 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김종양・신성범・김미애

윤영석 • 고동진 • 김성원

이종배 • 백종헌 • 주진우

강선영 · 김위상 · 강대식

박정하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.

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·조사·작성·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.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,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않은 실정임.

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·조사·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,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4조의2(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) ①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수 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사고 건 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(이하 "교통안전지 표"라 한다)를 개발·조사·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.
  -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경찰청장은 제1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개발·조사·산출·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 제144조의2(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) ① 경찰청장은 교통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 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 표(이하 "교통안전지표"라 한 다)를 개발·조사·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 표된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.   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.   ②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   제147조(위임 및 위탁 등) ① ~   ⑥ (생 략)
(전) 설> (전) 설>   (전) 설> (전) 경찰청장은 제144조의2에  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・조 사・산출・공표에 관한 업무를  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

<u>있다.</u>